●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 규정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운영 규정 제3조 (응시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개인사정으로 1차시험 시행 5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경우 또는 1차시험 시행 당일 별표1에 정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경우에는 응시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응시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응시료 환불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별표 1] 응시료 환불기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기준

1) 개인사정으로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

구분	환불요율
접수마감일 후 7일 이내에 응시를 취소하고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료의 100%
접수마감일 후 7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고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료의 50%
시험일 4일 전부터 시험 당일까지 응시를 취소하거나 미응시한 경우	환불 불가

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	환불요율	신청기한	제출서류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응시료의 100%	1차시험 종료 후 30일까지	입영통지서
본인, 형제, 자매, 자녀가 시험일에 결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결혼증명서류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 진단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시험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입퇴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시험일 이전 본인의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류 (재적사실 포함), 사망진단서(필요시)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가족의 사망 *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를 준용함.			
천재지변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개별안내
시험 시행 기관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개별안내
이 외에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고시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안내